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24
----------	------

2017년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혜련 의원 (찬성자 23명)
- 나. 제안일 : 2016년 11월 11일
- 다. 회부일 : 2016년 11월 14일
- 라. 상정일 :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4월 19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혜련 의원)

가. 제안 이유

-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를 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정을 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
- 시장은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함(안 제14조).
- 시장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7조).
-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조례안 제정 필요성 및 의의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를 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본 제정안은 청소년을 보호·육성하는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정책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특히, 청소년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을 배려하기 위한 계획, 지원, 실태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을 존중·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례안의 구성과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¹⁾ 추구하려는 4대 권리와 4대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시행중인 청소년관련 조례들과 유사·중복되는 조항들의 조정 여부와 향후 청소년 관련 조례들의 전체적인 통합 내지 조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관련 조례 목록〉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시행중인 조례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진흥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조(용어), 제24조(참여권)
제3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41조,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진흥 조례 제5조, 제6조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진흥 조례 제3조 제6조 제7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44조
제5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관한 기본 권리(4대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2016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하였음. 동 협약은 아동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규범적 틀을 제공하고, 각 조항은 실제적인 아동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각 나라에서 아동의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동 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일반원칙이 있음.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진흥 조례 제3조
제7조(청소년의 참여)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3조 제24조 제45조
제10조(청소년 예산)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진흥 조례 제3조
제11조(청소년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진흥 조례 제3조
제12조(청소년의 권리 홍보 등)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1조 제62조
제13조(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진흥 조례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8조~제11조, 제16조~제19조
제15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진흥 조례 제8조
제16조(국제 협력사업의 추진)	
제17조(추진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제1조
제18조(기능)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제2조
제19조(구성)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제3조

- 특히, 2017년 1월 5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근간으로 서울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고자 구체적 추진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는 바,
- 본 제정안도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와²⁾,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일반 원칙’³⁾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을⁴⁾ 충실히 조문에 반영하여 두 조례가 근거, 목적, 대상, 보호방안, 추진방법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각각 개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대상 범위 등에 있어 상충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본 조례안의 청소년대상의 범위 : 만12세 이상 ~ 19세 미만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아동 대상 범위 : 18세 미만

〈 아동 친화도시 조례 및 청소년친화도시 조문 비교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책무)

2) ① 생존권, ② 발달권, ③ 보호권, ④ 참여권

3) ① 무차별의 원칙, ②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③ 생존과 발달 보장 원칙, ④ 아동 의견 존중 원칙

4) ① 아동의 참여 보장, ②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구축, ③ 아동권리 전략 개발, ④ 아동권리 전담기구 마련, ⑤ 아동영향 평가, ⑥ 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⑦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⑧ 아동권리 홍보, ⑨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⑩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마련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청소년의 참여)
제8조(기능)	제8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
제9조(실태조사)	제9조(청소년 영향평가)
제10조(아동영향평가)	제10조(청소년 예산)
제11조(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등)	제11조(청소년 실태조사)
제12조(아동 건강증진)	제12조(청소년의 권리 홍보 등)
제13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제13조(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제14조(아동 역량강화)	제14조(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제15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제15조(보조금 지원)
제16조(아동 참여위원회 등)	제16조(국제 협력사업의 추진)
제17조(교육 및 홍보)	제17조(추진위원회 설치)
제18조(업무의 협조)	제18조(기능) 제19조(구성)
제19조(경비 지원)	제20조(임기)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시행규칙)	제22조(회의) 제23조(간사)
	제24조(수당 등) 제25조(운영)
부 칙	제26조(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부칙 제1조(시행일)

나. 세부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2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원칙(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실행·평가(제5조 및 제6조), 참여(제7조), 전담부서(제8조), 영향평가(제9조), 예산(제10조), 실태조사(제11조), 권리홍보(제12조), 권리증진(제13조), 안전조치(제14조), 보조금지원(제15조), 국제협력(제16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7조~제25조)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

조항	내용
제1조~제3조	친화도시조성의 목적, 용어정의, 조성원칙
제4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5조~6조	청소년 친화도시 계획 수립·시행·평가
제7조~16조	청소년 지원·보호, 참여보장, 전담부서, 영향평가, 실태조사, 권리보호·증진, 안전도모, 보조금, 국제협력 등
제17조~제25조	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등
제26조	시행규칙

- 안 제2조제2호는 청소년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조에⁵⁾ 따라 12세에서 19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기본법」에서는⁶⁾ 청소년의 범위를 9세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 바, 법적 정의의 일관성과 정책대상인 청소년의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 기본법에 맞출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는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일반원칙인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과 발달 보장 원칙, 아동 의견 존중 원칙을 명문화하여 친화도시의 구성에 필요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짐.
-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청소년기본법」 상의 사회의 책임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여짐⁷⁾.
- 안 제5조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본계획 수립시 청소년기본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⁸⁾ 근거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5년 마다 시행되는 국가의 ‘청소년정책

5)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이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만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7) 「청소년 기본법」 제7조(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본계획'과⁹⁾ 연동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지 않아 수립 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안 제 6조제1항의 시행계획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제3항은 의견수렴의 방법을 공청회로 한정하고 있으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의 방법을 다양하게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는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소년의 자유로운 표현과 청소년정책 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점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에서도 강조하는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안 제7조제2항의 청소년의회 구성·운영 규정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¹⁰⁾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와 기능상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여부와

특히, 청소년참여예산을 청소년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안 제7조제2항제3호의 경우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게 있고¹¹⁾, 예산심의의 권한은 직접선거로 선출된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있다는 점,¹²⁾ 청소년은 아직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완벽하지 않은 보호·육성의 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9) 제1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1993년9월 수립한 이래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 ~ 2017)이 시행중에 있음.

10)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제50조(설치)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어린이·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평가와 정책제안 제출
2. 어린이·청소년 인권 침해에 관한 대책을 시장, 시의회나 지역사회에 권고
3. 어린이·청소년의 예산참여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에 전달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5.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11)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판결요지 발췌 :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며.

- 안 제8조제1항은 시장이 청소년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바, 사무의 추진 및 시행은 시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시의회의 사전적, 적극적인 개입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규정의 임의규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시장이 청소년 전담부서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집행부는 전담부서를 ‘신설’ 내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시장의 고유권한의 침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안 제8조제2항의 각 호는 다른 청소년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제2조 및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제30조, 제37조, 제45조, 제50조, 제61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의 중복성 소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는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청소년 정책개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에도 포함되는 내용으로 청소년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마련에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청소년친화도시의 조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선행 연구없이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평가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는 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안 제11조제1항은 청소년과 관련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안 제11조제2항에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소년들의 성향과 반응, 현황 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양한 정도가 매년 큰 변동이 없고, 사회환경 변동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바,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일정주기별 실태조사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정책반영이 효율적인지 여부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13조는 청소년 ombudsman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mbudsman은 권력남용 또는 시민권익구제를 위해 적절한 행정지식과 경험 그리고 권한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며, 직무를 맡기는 것이 ombudsman 용어가 남발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 등 용어사용의 적

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며,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청소년인권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 읍부즈만 구성에 따른 일부 기능중복성도 우려된다고 하겠음.

- 안 제14조제1호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보육’을 보장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토록하고 있으나,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는¹³⁾ 것으로 정의되고 있어, 청소년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 서울시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 위원회간에 기능이 유사·중복 될 경우, 같은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혼란방지를 위하여 통합·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¹⁴⁾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¹⁵⁾ 있어, 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함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서울시청소년 육성위원회
1. 제5조에 따른 <u>기본계획</u> 의 수립·시행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
2. 제9조에 따른 청소년 <u>영향평가</u>	2.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u>평가 및 제도개선</u> 에 관한 자문
3. 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	

13) 「영유아 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1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위원회의 통합·폐지) 시장 등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15)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p>육·홍보 및 정보 등의 보급</p> <p>4. 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협력</p> <p>5. 그 밖에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3. 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자문</p> <p>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자문</p> <p>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p> <p>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 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p> <p>7.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p> <p>8.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p> <p>9.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요지

가. 수정이유

-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청소년의 범위를 중·고등학교 학령별 연령에 맞추고, 기존 조례의 중복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수정함.

나. 주요내용

- 청소년의 범위를 서울시의 특성에 맞춤(안 제2조제2호).
-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주기를 국가의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동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제1항).
- 청소년 정책관련 의견수렴 방법을 다각화 함(안 제5조제3항).
- 청소년의회의 청소년참여 예산심의를 삭제함(안 제7조제2항제3호).
-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를 조정함(안 제11조제2항).
- 청소년 권리증진 장치의 중복규정을 해소함(안 제13조).
- 청소년관련 위원회의 기능중복 해소방안을 마련함(안 제17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524
----------	-------------

제안년월일: 2017년 4월 19일

제안자: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청소년의 범위를 중·고등학교 학령별 연령에 맞추고, 기존 조례의 중복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수정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의 범위를 서울시의 특성에 맞춤(안 제2조제2호).
-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주기를 국가의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동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제1항).
- 청소년 정책관련 의견수렴의 방법을 다각화 함(안 제5조제3항).
- 청소년의회의 청소년참여 예산심의를 삭제함(안 제7조제2항제3호).
-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를 조정함(안 제11조제2항).
- 청소년 권리증진 장치의 중복규정을 해소함(안 제13조).
- 청소년관련 위원회의 기능중복 해소방안을 마련함(안 제17조).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수립하고”를 “5년마다 수립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청회를 열어”를 “공청회 등을 열어”로 한다.

안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청소년 영향평가)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1조 중 “연 1회 이상”을 “3년 마다”로 한다.

안 제13조 중 “단체를 지원·협력하고, 청소년 ombudsman 등을 둘 수 있다”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

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청소년”이란 「<u>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u>」 제2조에 따른 <u>청소년</u>을 말한다.</p> <p>3.~ 4. (생략)</p> <p>제5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수립하고</u>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u>공청회를 열어</u> 청소년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7조(청소년의 참여) ① (생략)</p> <p>② (생략)</p> <p>1.~ 2. (생략)</p> <p>3. <u>청소년참여예산의 심의</u></p> <p>4 (생략)</p> <p>5 (생략)</p> <p>③ ~ ④ (생략)</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1.(제정안과 같음)</p> <p>2. ----- <u>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u>을 말한다.</p> <p>3.~ 4.(제정안과 같음)</p> <p>제5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① -----</p> <p>----- <u>5년마다 수립하고</u> -----</p>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p> <p>-- <u>공청회 등을 열어</u> -----</p> <p>-----.</p> <p>제7조(청소년의 참여)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p>1.~ 2.(제정안과 같음)</p> <p>< 삭제 ></p> <p>3. (제정안과 같음)</p> <p>4. (제정안과 같음)</p> <p>③ ~ ④ (제정안과 같음)</p>

제8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청소년 영향평가)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행단계마다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한다.

③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한다.

제11조(청소년 실태조사) ① (생략)

② 시장은 주요 정책 입안자,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3조(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시장은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협력하고, 청소년 읍부즈만 등을 둘 수 있다.

제17조(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

① -----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제9조(청소년 영향평가)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년 실태조사) ① (생략)

② -----

----- 3년 마다 -----

제13조(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를 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친화도시”란 모든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청소년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청소년참여예산”이란 청소년이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4조제7항에 따른 권리에 따라 참여한 예산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청소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조성
2.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 조성
3. 청소년이 교육, 의료, 여가·문화 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 조성
4. 청소년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고,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는 도시 조성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청소년 친화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스스로의 일상생활이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전략

3.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체계
 4. 주요 시책의 연차별 추진 계획
 5. 자원 조달 방안
 6.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청소년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 ③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청소년과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7조에 따른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의 참여) ①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제안 및 발의
 2. 청소년 정책·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3. 교육청 및 자치구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심의
- ③ 시장은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4. 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청소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청소년 영향평가)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년 예산)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년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② 시장은 주요 정책 입안자,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한다.

제12조(청소년의 권리 홍보 등)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13조(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시장은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은 청소년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1. 모든 청소년이,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동등한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2.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안전을 위한 정책
3. 청소년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보
4.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 개선
5. 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
2. 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
4. 청소년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 조사
5.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

6. 그 밖에 청소년의 권리 증진 등과 관련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6조(국제 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세계적인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 협력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제17조(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제9조에 따른 청소년 영향평가
3. 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정보 등의 보급
4. 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협력
5. 그 밖에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청소년 정책과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실행위원회의 구성·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관리한다.

제24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